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93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이인선・박정하・권영세

이양수 · 김성원 · 김선교

천하람 • 안상훈 • 인요한

조승환 · 김위상 · 정동만

박성훈 • 강승규 • 박수민

김 건 • 박충권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의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급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촬영물등과 함께 인적정보 등의 동반 유포에 따른 2차 피해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시적 법률조항이 없어 유포 플랫폼에 대하여 삭제 지원을 위한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바, 삭제 지원 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촬영물등과 함께 피해자의 성명, 나이, 사진 등 인적사항이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특정 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의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구심점이 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함에 따라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컨설팅 업무를 구체화하고 삭제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내용을 법률에 정하고자 함(안 제7조의4 신설 등).

법률 제 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촬영물등의"를 "촬영물등과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국가는 제7조의 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 및 해당 촬영물등이 정보통신 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 · 긴급상담 및 삭제 지원
- 2.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ㆍ방지 관련 연구 및 홍보
- 3.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 · 방지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 4.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방지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 류
- 5. 불법촬영물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방지 관련 업무
- ③ 시·도지사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지원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 삭제 지원
-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3.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방지 관련 업무
- ④ 시·도지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 리법인을 지정하여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쳙 했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 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 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 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 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 -----촬영물등과 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있다.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 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의-----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 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 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u>국</u> <u>가</u>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 리인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u>국가</u>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④ (생 략)
- ⑤ <u>국가</u>가 제1항에 따라 촬영 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 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 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 다.
- ⑥ (생략)

<신 설>

<u>국</u>
가와 지방자치단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4(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 운영)

- ① 국가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 및 해당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지원업무를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 수·긴급상담 및 삭제 지원
- 2.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방 지 관련 연구 및 홍보
- 3.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방지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 4.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방지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 5. 불법촬영물등 피해자 보호ㆍ

- 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방지 관련 업무
- ③ 시·도지사는 제7조의3제1 항에 따른 촬영물등에 대한 삭 제지원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 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 수, 삭제 지원
-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 관리
- 3.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방 지 관련 교육 및 홍보
-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 방·방지 관련 업무

④ 시·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종사자의자격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지정, 위탁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